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34
----------	-----

제출연월일 : 2007. 10.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기준재정 산정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반영 및 페널티제도를 신설함
(안 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10. 5. ~ 10. 2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를 “지방자치법 제173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중 “사업인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체노력반영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자체노력정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자치구의 장”을 각각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별표 2중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60조</u> 및 <u>동법시행령 제57조</u>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u>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u>시가 재정적 결함이</u>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② (생략) ③ (생략)</p> <p>1.~4. (생략)</p> <p>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업인 경우</u></p> <p><신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173조 ----- ----- -----<u>대전광역시</u>----- -----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u>대전광역시</u>----- -----</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u>경우</u></p> <p>제9조의2(<u>자체노력반영 등</u>) 제7조의 규정에 의한 <u>기준재정수입액</u>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u>기준재정수요액</u>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구의 <u>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자체노력정도를 반영 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시장은 다음연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각 <u>자치구의 장</u>이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u>자치구의 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각 <u>자치구의 장</u>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u>자치구의 장</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별표 2] 추정단위 수치산정(제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정단위</th> <th>산정기준</th> <th>표시단위</th> </tr> </thead> <tbody> <tr> <td>1. 자치구의 의회 의원수</td> <td>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원수</td> <td>인</td> </tr> <tr> <td>2. ~ 10. (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추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 자치구의 의회 의원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원수	인	2. ~ 10. (생략)			<p>제10조(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자치구청장 -----</p> <p>②<u>자치구청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보통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u>자치구청장</u>----- ----- ----- ----- -----</p> <p>②----- ----- ----- <u>자치구청장</u>-----</p> <p>[별표 2] 추정단위 수치산정(제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정단위</th> <th>산정기준</th> <th>표시단위</th> </tr> </thead> <tbody> <tr> <td>1. 자치구의 의회 의원수</td> <td>「공직선거법」----- ----- ----- -----</td> <td>인</td> </tr> <tr> <td>2. ~ 10.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추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 자치구의 의회 의원수	「공직선거법」----- ----- ----- -----	인	2. ~ 10. (현행과 같음)		
추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 자치구의 의회 의원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원수	인																	
2. ~ 10. (생략)																			
추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 자치구의 의회 의원수	「공직선거법」----- ----- ----- -----	인																	
2. ~ 10.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11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30일
3.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23) 상정,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 권혁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기준재정 산정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정도 반영 및 폐널티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페널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감사원 권고사항인 재정 페널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 제9조의2 조문내용 중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 지출 등을 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4
----------	-----

제안연월일 : 2007. 12.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준재정 산정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반영 및 페널티 제도의 내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의2).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2중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를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 지출 등을 하거나” 로 한다.

